

예산군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

- 검토보고 -

□ 제안이유

- 예산에 거주 또는 연고가 있는 대학생들에게 방학 기간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통해 군정에 직접 참여하여 올바른 인식과 이해로 내 고장을 알고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갖는 계기부여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선발대상을 정함(안 제2조)
- 아르바이트 제도는 매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
-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군 본청 및 소속기관, 의회사무과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가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- 보상금은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일용인부(사무보조) 노임단가를 준용하되,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토록 함(안 제5조)

□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15조
- 충청남도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

□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예산군에 거주 또는 연고가 있는 대학생에게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군정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군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며,
- 건전한 사회구성원을 육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.